운영 세칙

삼계면 주민자치회

장성군 삼계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 세칙은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삼계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삼계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명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회는 "삼계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삼계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삼계면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삼계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삼계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 모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장성군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삼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삼계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삼계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삼계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장성군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10조(위원의 모집과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모집**〉

① 위원은 임기 만료 전 1개월 전 모집한다.

② 위원 모집은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 모집 공고는 군 홈페이지 삼계면 게시판 및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2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하고 원활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된 바에 따라 면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여 면장이 위촉한다.

1. 삼계면장

2. 삼계면 주민자치회장

3. 삼계면 이장협의회장

4. 삼계면장 추천위원 2명

5. 삼계면 주민자치회장 추천위원 2명

⑥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각각 호선한다.

⑦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⑨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분과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동일 직위에서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삼계면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요내용은 유·무선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

⑤ 간사는 모든 사업과 행사 등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

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고문)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의견 제출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고문의 정수는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5조(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1명의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1. 주민자치회의 통상적인 사무업무 및 주민총회, 정기회의 등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2. 삼계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모든 위원이 참여한다.

1. 주민자치분과

가.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기획 및 홍보

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동참 및 협의

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역량 강화교육 기획 추진

라. 주민 참여 예산 운영에 관한 기획 추진

마.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전시행사, 문화 여가에 관한 사업 추진

바. 마을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2. 대회협력분과

가. 민관군 협의체 구성 운영

나. 상무대와 교류 및 소통

다. 상무대와 교류 및 소통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제시

3. 문화교육분과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사업

나.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다. 주민자치 위원 교육 참여 프로그램 개발

라. 체육 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 사업 추진

4. 생활안전협의분과

가. 교통안전 활동

나. 생활 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

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프로그램 개발

라. 면내 초·중·고 학생 등·하교 안전 확보

마. 환경정비 등 관련 사업기획 추진

바. 지역 복지 및 자원봉사 사업기획 추진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 후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두며, 자치회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임원회의

5. 분과위원회의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주민총회 성립 요건은 삼계면 인구대비 2%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3. 주민총회 자격은 주민총회 개최일 현재 주민등록상 삼계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4. 주민총회 연령은 주민등록상 만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삼계면 주민으로 한다.

5. 주민총회 방식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삼계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삼계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삼계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삼계면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삼계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삼계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의 개정
2. 사업 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의결
3.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5.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검토 및 승인
6. 분과위원회 구성
7.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전에 개최하고 회장, 부회장 2명, 사무국장, 간사,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0일 이내 긴급하게 조치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에서 임원회의에 위임한 사항
5.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회의 개최 및 운영)

①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삼계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3.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자치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무선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23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수, 봉사 등에 적극적 참여를 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구성된 임원 및 위원은 자치회에서 정한 금액, 월 3만원을 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1곳에 이상 참여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및 대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촉된 의원은 차기 자치회의 위원 위촉에서 배제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정기 월례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불참할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

제26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삼계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센터 시설, 물품의 유지 및 관리

2. 자치센터 보안 관리 (출입문 개폐는 자치회장, 간사, 사무국장, 자원봉사자에 한한다)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4. 전열기구 관리 등 화재 예방 등

제27조(자치센터의 운영 시간)

① 자치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09시부터 20시 까지로 한다.

② 주말은 주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 단, 휴관 시는 미리 공지한다.

제28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 신설, 폐지, 또는 변경 시는 운영시간, 수강료, 운영방법 등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②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범위 등은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은 자치회장의 승인 후 간사가 관리키로 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강사 및 실비 보상 등)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금액 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 식비 단가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 수당은 관련된 수업의 수강료 수입금액에 맞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가 교부된 기관 및 부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입금,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 예산
2. 수입금은 주민자치회 수익 사업 **및 프로그램 수강료**
3. 특별회비는 정기회의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4. 찬조금은 주민자치회 사업,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자치회장은 정기회의에 재정보고서(수입 및 지출 계획)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비용
3.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4.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위한 지원 비용
5.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밖에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직인 및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를 위해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고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③ 자치회장이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간사는 월별로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3. 문서 접수 · 등록대장
4. 현금출납부, 회계장부 등
5. 사업 계획서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⑤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5조(감사 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